

의안번호	2207502
의 퇴 인	이재관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6.
추계번호	25A0242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2(영세소상공인 대책)	정부는 영세소상공인(소상공인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)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의2(영세소상공인 대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은 “소상공인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”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(안 제22조의2),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
 - 개정안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관련 현행 사업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의 영세소상공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동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개정안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중소벤처기업부의 「소상공인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2022년 기준으

로 전산업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.4만개이며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을 보면, 5천만원 미만 34.6%, 5천만원~1억원 미만 20.3%, 1억원~2억원 미만 17.3%, 2억원 이상 27.8%임

- 산업별, 매출액 규모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산업별 매출액 규모별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(2022년 기준)

(단위: 만개, 조원, %)

	사업체 수	총 매출액	5천만원 미만	5천만원~ 1억원	1억원~2 억원	2억원 이상
전산업	412.4	964.3	34.6	20.3	17.3	27.8
제조업	48.8	214.5	20.4	15.2	17.7	46.7
건설업	46.0	134.4	25.6	22.2	24.6	27.7
도매 및 소매업	135.1	407.9	34.0	15.5	15.0	35.5
숙박 및 음식점업	72.8	105.5	26.4	27.1	22.8	23.7
정보통신업	7.7	12.4	41.6	14.9	16.1	27.5
부동산업	17.3	16.9	52.2	21.2	12.4	14.3
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	10.7	17.6	38.1	19.2	17.0	25.8
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10.8	15.8	48.4	18.9	13.5	19.2
교육 서비스업	18.5	12.9	47.1	30.3	14.9	7.7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, 「소상공인실태조사」(2022년 기준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